

외국법자문사징계규정

2009. 11. 23.

규정 제86호

개정 2010. 1. 25.

제 1 장 통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징계처분의 공개범위 및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한변호사협회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판사 2인, 검사 2인, 외국법자문사 2인, 변호사 2인,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 교수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둔다.

② 판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검사 및 외국법자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장관의 각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하며, 변호사 및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 교수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협회장이 추천하고 위촉한다.

③ 판사, 검사,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⑦ 예비위원은 위원이 결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판사인 예비위원은 판사인 위원이, 검사인 예비위원은 검사인 위원이, 변호사인 예비위원은 변호사인 위원이, 법과대학 교수인 예비위원은 법과대학 교수인 위원이, 외국법자문사인 예비위원은 같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인 예비위원의 직무대행 순서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3조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징계혐의사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에 관하여 심사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징계개시청구를 받은 자(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징계위원회의 기구와 직무]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출할 당시, 그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 2인을 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위원장과 그 대행자로 지명된 자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써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조사위원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④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조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협회장이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여 의사록 등을 작성하고, 조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위원회가 심의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며,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에 관한 서류의 작성, 송달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주임징계위원의 지명] ① 징계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임징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주임징계위원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심사조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임징계위원은 지정받은 징계사건의 심사에 관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5조의 규정은 주임징계위원의 심사에 준용한다.

제6조 [징계위원회의 소집]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회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부담] 징계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에 관여한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징계사유 및 징계개시청구

제9조 [징계의 종류 및 사유] ①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승인취소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정직(停職)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② 전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전항 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항 제3호에 따른 정직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3항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한 경우
2. 이 회가 정하는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외국법자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 [징계개시의 청구] 협회장은 외국법자문사가 전조 제 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하고, 전조 제3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11조 [의뢰인 등의 징계개시청구의 신청]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의뢰인 등”이라 한다)는 외국법자문사에게 전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협회장의 결정] ① 협회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청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 협의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징계개시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제11조의 신청에 대하여 징계개시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010. 1. 25. 본조 개정)

제13조 [이의신청]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협회장이 징계개시청구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청구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청구의 신청이 접수되어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10. 1. 25. 개정)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징계개시청구 절차] ① 징계개시청구를 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 혐의사실 등을 기재한 징계개시청구서와 부분 10통 및 의뢰인 등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개시청구 신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협회장은 징계개시청구를 한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협회장은 국가기관의 통보에 의한 외국법자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징계개시청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국가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징계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개시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 3 장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제15조 [징계개시의 통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청구가 있거나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때에는 즉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개시통지서와 징계개시청구서 부분 1통을 송달하여야 한다. (2010. 1. 25. 개정)

② 징계개시통지서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심의기일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결정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있거나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징계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0. 1. 25. 본조 개정)

제17조 [심의의 정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개시청구된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2010. 1. 25. 본조 개정)

제18조 [심의기일의 통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심의기일의 일시·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는 고지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청구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최초 심의기일의 통지는 그 기일의 7일 전까지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 [심의기일의 비공개] ① 심의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가 공개신청을 한 때에는 공개한다.

제20조 [사건의 병합·분리]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의견을 들어 수개의 징계혐의사건의 심의를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21조 [징계혐의자의 출석의무] ①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나 그 특별변호인이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제22조 [특별변호인] ①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이 규정이 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3조 [징계혐의자 등의 진술 및 증거제출] ①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그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참고인의 심문, 검증 등의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징계혐의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징계 청구된 사건에 관하여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은 제3항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 [징계위원회의 심의방법] ① 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계혐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이나 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서류 기타의 물건의 소지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자를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 및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 [서류의 열람] 징계혐의자는 심의기록과 증거물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단, 그 일시 및 장소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심의기일조서 등] ① 심의기일에는 심의기일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10. 1. 25. 개정)

② 조서에는 심의일시·장소, 출석한 위원의 성명, 공개여부, 심의의 경과와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임징계위원의 심사기일의 조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 [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에 의한다.

(2010. 1. 25. 개정)

② 삭제 (2010. 1. 25.)

③ 삭제 (2010. 1. 25.)

제28조 [비밀엄수] 위원장·위원·예비위원·간사·서기 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29조 [결정] ①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의견이 없을 때에는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제30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징계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및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징계혐의자의 성명, 등록번호, 사무소 및 특별번호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주문

4. 이유

5. 의결 연월일

② 징계결정서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각 위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제31조 [결정의 통보 및 통지] ① 징계위원회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징계개시청구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징계결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010. 1. 25. 개정)

제32조 [이의신청] 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0. 1. 25. 개정)

② 이의신청인은 징계심의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제33조 [징계결정의 효력발생] 징계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법무부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4조 [다른 법률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징계의 집행 및 공고

제35조 [징계의 집행] ① 협회장은 징계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즉시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징계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등록취소는 징계협약자의 외국법자문사등록원부에 그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외국법자문사등록원부를 말소한다.
 2. 정직은 징계협약자의 외국법자문사등록원부에 정직개시일과 정직기일을 명시하여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한다.
 3. 과태료는 징계결정의 내용을 외국법자문사등록원부에 기재하고, 협회장이 검사에게 의뢰하여 집행한다.
 4. 견책은 협회장이 징계협약자에게 근신자숙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송달하고, 징계결정의 내용을 외국법자문사등록원부에 기재한다.
- ② 등록취소 및 정직의 경우의 징계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보고 및 통지] ① 협회장은 징계처분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협약자에게 징계의 집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공고 및 공표] ① 협회장은 징계처분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0. 1. 25. 개정)

② 협회장은 외국법자문사와 관련된 징계에 관한 처분 또는 징계결정서의 주문 및 이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38조 [공고방법 등의 지정] 협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방법 및 공고주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고주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징계정보의 제공

제39조 [정보제공의 신청] 사건의뢰, 상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자는 외국법자문사를 특정하여 징계처분의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하 "정보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 [신청방법] ①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때에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 [신청의 처리] 협회는 이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사실은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의 내용이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부과 또는 견책인 경우
2. 제44조의 정보제공 기간을 도과한 징계처분인 경우 (2010. 1. 25. 개정)

제42조 [제공방법] 정보제공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협회에서 직접수령, 우편발송, 모사전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발송의 방법에 의한다.

제43조 [유의사항] ① 협회가 이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제3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라 정보제공을 받은 신청자는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정보제공 기간]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의 경우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2.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년
3. 과태료의 경우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제45조 [자기 정보 열람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언제든지 자신의 징계처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및 징계처분 여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제1항의 기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기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처분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

제46조 [비용 등 부담] ① 협회는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등을 신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 등은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